

**[사 건 명] 행심 2016-32**

**학교폭력에 가해에 따른 처분 취소청구**

청구인 : ○○○

피청구인 : ◇◇고등학교장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6. 8. 31. 청구인에 대하여 한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학급교체 등』 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이유]**

**I . 사건개요**

청구인은 ◇◇고 1학년 학생으로 인터넷 웹사이트에 익명으로 같은 반 급우인 ●●●의 얼굴과 상반신 사진을 본인의 것처럼 올려 네티즌들로 하여금 평가해 달라는 글을 썼고, 2016. 8. 10. ●●●는 다른 학생으로부터 이 사실을 전해 들어 2016. 8. 16. 위 ●●●가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하여 2016. 8. 31. 학교폭력위원회(이하 ‘학폭위’ 라고 함)가 개최되었으며, 그 결과 청구인에게 학급교체와 특별교육이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함)이 상당함을 결정을 하였으며, 2016. 9. 2. 이 사건 처분에 기해 청구인은 학급교체 되었으며,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이의가 있어 2019. 9. 7.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 II.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16. 8. 13. 담임교사로부터 이 사건을 듣고 즉시 ○○○과 그 모친에게 전화하고 직접 만나 사과 및 화해를 하였으며, 2016. 8. 18. 학교폭력으로 신고 된 이후 ○○○측에게 여러 차례 전화와 만남을 시도하였으나 거부하여 청구인이 자필로 쓴 편지를 ○○○에게 전달하였다.

나. 2016. 8. 22. 상담시 교감선생님은 청구인측이 시교육청에 상감한 사실을 언급하며 고자세로 언성을 높였다. 그날 저녁 청구인측은 ○○○ 모친을 만나 사과하며 선처를 구하였고, 2016. 8. 23. 청구인측의 부탁으로 ○○○ 모친이 교감선생님에게 전화하여 학폭위 연기를 요청하자 ○○○측에서 결정하라고 하여, ○○○은 청구인의 공개사과를 통해 용서하기로 했는데, 교감선생님이 피해학생을 불러 사과 받지 못하게 하였다.

다. 2016. 8. 31. 학폭위 개최 당시 위원들 중 교감선생님만 거의 대부분의 발언을 하면서 피해학생의 원대로 전학을 요구하였으며, 2016. 9. 1. 학폭위 결과통지서를 청구인을 통해 직접 전달하게 하였으며, 구두로 다음날부터 학급이 교체된다고 알렸고, 재심청구에 관한 언급도 하지 않았으며, 2016. 9. 2. 학급교체 후 ○○○이 큰소리로 청구인의 욕을 하고 소문을 내어 학교생활이 어려운 상황이다.

라. 청구인의 잘못은 인정하나, 처벌 수위가 너무 높고, 교감선생님의 강압과 협박적인 태도, 중재 역할 미비, 회의록 비공개 처리, 재심절차 안내도 없이 바로 징계처분을 이행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처분

은 과하고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Ⅲ.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사건을 들은 피해학생 ●●●가 신고하러 가는 것을 알게 된 청구인은 ●●●에게 카톡으로 “내 비밀번호가 해킹당해서 내가 네 사진을 올린 것처럼 돼있다. 친구 중에 ∇∇이란 애가 있는데, 그 애가 페이스북에 사진을 저장해 놓고 매일 이렇게 돼야지 하며 잠드는 친구인데 지금 물어보겠다” 고 하며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였다. 이후에도 청구인은 ∇∇이라는 가상인물의 이름으로 ●●●에게 메시지를 보내자, ●●●가 전화로 통화하자고 하니 요금을 못 내서 정지됐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며 청구인 본인은 이 사건과 무관하다고 주장하였으나 ●●●가 청구인의 태도에 수상함을 느껴 경찰과 담임교사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담임교사가 청구인의 모친과 통화하여 추궁하자 그때서야 청구인은 이 사건을 인정하였다.

나. 학폭위는 반드시 필요한 절차였으며 적법하게 진행하였고, 사전에 처분 수위를 정해놓고 강요한 사실이 없고, 학폭위에서 ●●● 부모는 피해자보다 가해학생이 더 당당하게 학교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마주치지 않으려 해도 청구인과 ●●●의 번호가 앞뒤라서 조 편성 등에서 함께해야 하는 상황이 많아 부담스럽다고 진술하였고, 또한 ●●●는 이 사안이 퍼질까봐 노심초사하며 학교생활을 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재수가 없어서 걸렸다고 말하는 등 당당한 모습을 보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 학교에서 졸업할 수 있도록 선처해 주기를 바랐고, ●●●측에서는 가해학생과의 분리를 적극적으로 요청하여 가해학생에게도 기회를 주자는 취지로 학급교체 처분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 IV.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 1. 관계법령

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7조, 제22조

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다.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8조, 제18조

##### 2. 판 단

가. 인정되는 기초 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와 답변서(제출된 증거 포함), 청구인 및 피청구인에 대한 구술심리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 1) 청구인은 같은 반 친구인 ●●●가 사용하는 페이스북에 있는 상반신 사진을 캡처하여 이를 이용해 인터넷 웹사이트에 청구인이라 마치 ●●●인 것처럼 가장하여 글을 올려 얼굴을 평가해 달라고 글을 올렸고, ●●●는 2016. 8. 10. 오후 5시경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친구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전화로 듣게 되었다.
- 2) 위 ●●●는 청구인에게 사실관계를 묻자, 처음에는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고 하였고, 이를 수상하게 여긴 위 ●●●는 담임선생님

에게 알려 청구인을 추궁하자 그제서야 자신이 한 것이라며 잘못을 시인하였으며, 이후에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친은 피해자 학생과 부모에게 찾아가 사과하였고 청구인은 피해학생에게 손편지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자신의 잘못에 대해 용서를 구하였다.

- 3) 학폭위가 개최되기 전에는 피해자측에서 청구인이 학급반 친구들과 앞에서 공개사과를 하면 용서를 해 주겠다고 하자 그렇게 하겠다고 하여 이를 담임교사에게 알렸고, 이에 담임교사는 교감에게 보고를 하자 다시 교감은 피해학생을 불러 의사를 확인한 결과, 피해학생이 다시 처벌의사를 표현하였다고 하면서 공개사과는 없었던 일로 하여 예정대로 2016. 8. 31. 되었고, 학폭위에서는 학급교체와 특별이수교육 처분이 상당함을 결정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한 판단

- 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협박, 약취,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 “따돌림”이란 학교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은 경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위원장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의거 회의를 소집하고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2) 먼저 청구인 측에서 주장하는 재결심사에 대한 고지여부를 하지 않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비록 처분결과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식을 취하기는 하였으나, 그 처분결과통지서상에는 재심 절차 및 행정심판 등의 절차에 관한 안내가 기재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그 절차에 대한 안내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어 보이기 는 하지만 이를 두고 법에 위배되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3) 다음으로 청구인은 학폭위에서 상정된 안건인 행위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비록 장난삼아 피해학생의 상반신 사진을 임의로 캡처하여 마치 자신인 것처럼 얼굴을 평가해 달라는 글을 올렸다고 하지만, 이로 인해 피해 학생은 자신이 원치 않게 얼굴 등 신체에 대한 평가를 인터넷을 통해 네티즌으로부터 무차별·무분별적으로 당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악성댓글 등으로 인한 정신적인 충격과 심리적인 고통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은 이미 학급교체가 되어 어느 정도 각자 생활에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학생 역시 가해학생과 함께 학급생활을 하는 것을 원치 않고 있는바, 이러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4) 다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피해학생 측의 요구에만 치중하여 학폭위 개최가 이루어진 점이나 학폭위 개최 후 처분결과통지를 한 후 청구인 측에서 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기도 전에 학급교체처분을 이행함으로써 사실상 이의제도를 무력화하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학폭위 운영이나 처분에 대한 이행이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보이므로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향후 제도보완이나 학폭위 운영과정에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점임을 지적해 둔다.

## V.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